

## 목포시근로자복지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# 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8년 1월 5일 목포시장
- 나. 회부일자 : 1998년 1월 15일
- 다. 상정일자 : 1998년 1월 16일

### 2. 제안설명요지

#### 가. 제안설명

- 본 회의(제1차) : 지역 경제 국장이 생연
- 사회산업위원회 : 사회근로복지관장 황 남 철

#### 나. 제안이유

- 미혼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의 시설노후화로 인한 관리비 증가에 대비하고 입주자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실조건을 세분하여 임대보증금 및 사용료를 조정키 위함.

#### 다. 주요골자

- 복지관 위치 지번 확정(안 제2조)
  - 상동 하당 택지개발사업지구 273브럭 17롯트 → 옥암동 992번지 19호
- 임대아파트 시설규모 명시(안 제3조 제2항)
  - 임대아파트의 규모는 지하1층, 지상12층(5,554평방미터)이며 13평형 120세대의 세대당 내부구조는 침실 1인용 1칸, 침실 2인용 1칸, 주방, 화장실, 발코니, 창고로 구분된다.
- 생활관 사용료 조정

현 행 (1실3인기준)			개 정 안 (1실2~3인기준)			
구 분	금 액	비 고	구 분	금 액	비 고	
입 주 보증금	20,000원	1인당부담액	입주보증금	1 인 용	21,000원	세대당 부담액 63,000원 (1인당 21,000원)
				2인용2인	42,000원	
				2인용1인	42,000원	
월사용 료	10,000원	1인당부담액	월사용료	1 인 용	10,500원	세대당 부담액 31,500원 (1인당 10,500원)
				2인용2인	21,000원	
				2인용1인	21,000원	

**3. 질의 및 답변요지**

“생 략”

**4. 위원회 활동**

- 제75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('98. 1. 16)
  - 관계공무원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·응답
  - 안전검토 및 심사의결

**5. 토론요지**

- 목포시근로자복지관(미혼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)의 위치 지번 확정과 임대아파트 시설규모를 세분화 하여 입주자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임대아파트의 시설노후화로 인한 관리비 증가에 대비하여 임대보증금 및 월 사용료를 조정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관계법령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현행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함.

**6. 심사결과**

【원안가결】